의안번호	2218024
의 뢰 인	박수영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7.
추계번호	26F1740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공익법인에 출연한 법인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도 조정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제2항(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)	○ 법인주식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도를 의결권 행사여부, 목적사업 및 다른 공익법인에의 출연비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정 – 대상요건 및 특례내용: (현행)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여부 및 목적사업 등에 따라 5~20% → (개정안)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여부, 목적사업 및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비중 등에 따라 불산입한도를 5~50%로 조정	
2	안 제48조제2항(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)	○ 안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도를 적용받은 공익법인이 불산입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–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제한된 범위로 행사하기로 하였으나, 이를 위반한 경우 – 기준금액의 50% 이상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기로 하였으나, 출연하지 않는 경우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제2항(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·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8조제2항(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·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공익법인에 법인주식 출연시 적용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한도를 조정하는 등의 경우, 상속세 및 증여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)

○ 안 제16조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법인주식에 적용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– 공익법인의 목적사업, 출연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여부,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정

[표 1] 공익법인에 출연한 법인주식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도: 현행 및 개정안

현행		개정안	
요건	불산입한도	요건	불산입한도
– 공익법인 목적사업: 자선·장학 사회복지 – 의결권 행사여부: 행사하지 않음	20%	(좌 동)	20%
		– 공익법인 목적사업: 자선·장학 사회복지 – 의결권 행사여부: 행사하지 않음 – 다른 공익법인 출연여부: 기준금액[1)]의 50% 이상 출연	50%
– 공익법인 목적사업: 제한없음 – 의결권 행사여부: 행사 가능	10%	(좌 동)	10%
–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	5%	–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※ 의결권 행사여부, 공익법인 목적사업 등 요건이 위의 우대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	5%
– 법인 지분을 5%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, 이사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	5%	(좌 동)	5%

주: 1) 기준금액: 출연재산의 1%(내국법인 지분의 10%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3%)

○ 안 제48조제2항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법인주식이 안 제16조에 따른 불산입 요건을 위반할 경우,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

– 현행 제48조제2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익목적사업 이외에

사용 등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규정

- 개정안은 안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법인주식에 대하여 불산입한도를 적용받는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

※ 불산입한도 적용요건은 안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, 다른 공익법인에 일정금액 이상 출연하기로 하는 요건 등을 의미

[표 2]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: 현행 및 개정안

현행	개정안
–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등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이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음	– (좌동)
–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,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법인주식 취득에 사용하여 법인의 지분이 동법 제16조의 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	– (좌동)
–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	– (좌동)
–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	– (좌동)
– 동법 제16조제2항에 법인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불산입한도를 적용받은 주식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	– 안 제16조제2항에 법인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불산입한도를 적용받은 주식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
–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않는 경우	– (좌동)
– (신설)	– 안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아닌 공익법인에 기준금액[1]의 50% 이상 출연하기로 한 공익법인이 이를 위반하여 출연하지 않은 경우

주: 1) 기준금액: 출연재산의 1%(내국법인 지분의 10%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3%)

❑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가액,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다른 공익법인으로의 출연여부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○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에 출연된 법인주식의 과세가액, 현행 과세가액 불산입한도를 우대받는 의결권 행사 요건 및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금액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나,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국세청에 따르면,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등이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의 총량 자료는 존재하나, 법인주식 등 자산별 구분이나 공익법인의

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부재

- 참고로,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음

※ 출연재산은 법인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다른 자산도 포함한 수치임

[표 3]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공익법인 출연재산 현황 추이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합계	990.5	620.2	15,487.1	4,979.3	4,341.3
- 상속세	854.1	618.0	15,352.9	4,957.7	4,321.8
- 증여세	136.4	2.2	134.3	21.6	19.4

주: 공익법인에 출연된 법인주식,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을 의미하며, 과세미달(과세표준 500만원 이하)에 해당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제외

자료: 국세청 국세통계포털(TASIS)

○ 또한,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법인주식의 불산입한도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지 못함에 따라 불산입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 세수효과 또한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